



연 세 대 학 교

성 폭 력 대 책 위 원 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성폭력대책위원회 2012-2 정기회의 보고 및 규정 법률자문 내용 안내의 건

1.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먼저, 지난 12월 5일 성폭력대책위원회 2012년도 2학기 정기회의에서 사업보고 중 설해심 위원(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교수평의회 추천)께서 성폭력 사건 전반에 대한 정기회의 보고는 당연직 위원들에게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재확인 결과 모든 위원께서 보고 받으시는 것이 관례입니다. 당일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들께서 확신이 없으셨던 상황을 미루어 다시 한번 확인 안내 드립니다.

3. 지난 회의에서 논의 된 내용은 붙임 회의록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난 회의의 결의사항 중 새로 개정한 규정에 대하여 자문을 받자는 의견이 있어 교내 '연세공익법률지원센터' 간사로 계시는 손창완 교수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위원들께서 염려하셨던 '상위법 위반' 이나 '피해자 동의없이 사건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붙임 의견서 참조) .

붙 임 1. 2012-2성폭력대책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2012-2회의록.pdf)

2. 손창완교수 법률자문 의견서(의견서(성평등상담실).hwp)

③ 연세대학교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및 시행세칙(연세대학교 성폭력예방 및처리에관한규정(2012.11).hwp) 끝.

<제2대대 반성폭력> 파일에 보관.

성 폭 력 대 책 위 원 장

직 인 생 략

수신자 고은주 교수(대학원 부원장), 이태화 교수 (간호대학 간호환경시스템학과), 박노훈 교수(연합신학대학원), 설혜심 교수 (문과대학 사학과), 김정환 차장(교육과학대학 행정팀), 기선아 과장(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노동조합 여성부장), 김광현 (노동조합 사무국장), 대학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학생회

전문연구원 노주희

소장 나윤경

학생복지처
장 손봉수

교학부총장

12/24
유강민

협조자

시행 성평등-221 (2012. 12. 24.)

접수

우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http://www.yonsei.ac.kr>

전화 02-2123-2118

전송 02-2123-8617

/ rohju@yonsei.ac.kr

/ 공개

2012-2 성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12년 12월 5일(수) 오후 4시
2. 장소 : 본관 2층 소회의실
3. 참석위원 : 유강민 위원장(교학부총장), 손봉수 학생복지처장, 나윤경 성평등센터 소장, 설혜심 교수(문과대학, 사학과), 박노훈 교수(연합신학대학원), 김정환 차장(교육과학대학 행정팀), 이주희(대학원 총학생회장), 김태현(총여학생회 부회장)-이상 8명
4. 불참위원 : 고은주 교수(대학원 부원장), 이태화 교수(간호대학, 간호환경시스템학과), 김광현 사무국장(노동조합), 기선아 과장(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 노동조합 여성부장), 총학생회
5. 기도 : 유강민 위원장(교학부총장)
6. 보고 : 1) 2012년 2학기 교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근로) 환경 조성사업 추진결과 및 사건보고
2) 2013년 1학기 사업 계획 보고
7. 기타안건심의 :
 - 1) 교원대상 온라인 성폭력예방교육 실시에 대하여
 - 2) 교원 수양회에서 진행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하여
 - 3) 학과장 간담회에 대한 제안
 - 4) 피신고인이 가해자 확정시 학과장에게 공식통보하는 것을 당연절차로 하는 것에 대하여
 - 5) 여교수 간담회에 대한 제안
 - 6) 학생대상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
8. 사건심의 : 성평등상담실에 신고, 접수된 사건이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건 성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심의함: 사건번호 [2012-07], [2012-13], [2012-14]
9. 결의사항
 - ❶ 학사포털서비스와 연계하여 사이버 강의 의무화 하는 방법은 1차 수업계획서 등재시에 시간을 줄여서 5분 이내로 하는 동영상강의가 가능한지 여부와 학기말에 강의평가조회시에 동영상강의 시청 의무화에 대해 다시 제안해 보기로 하다.
 - ❷ 교직원수양회에서 1시간은 강사를 잘 모셔서 30분 강의후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구성 하기로 하다. 내년도에는 성평등센터에 UCC공모전과 같은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성평등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다.
 - ❸ 본부에서 한 학기 한번(첫달 마지막 주) 학과장 모임이 있는데 교무처에 건의해서 15분 정도 확보하기로 하다.
 - ❹ 피신고인의 가해자 확정시 학과장에게 통보하는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 ⑤ 여교수 간담회를 하는 것도 좋고, 더불어 안내문, 혹은 지침서의 형태로 얇은 책자 만들어서 전 교수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기로 하다.
- ⑥ 학생들에 대한 일상적 예방교육은 한학기 강의 개설, 한주간 성평등주간 만들어 '영화, 강의, UCC공모전 등'을 진행하고 RC시스템에 성평등 교육을 필수로 넣는 것을 고려하기로 하다.
- ⑦ 사건번호 [2012-07]에 대한 사건 심의 결과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판단하고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발의하기로 함.
- ⑧ 사건번호 [2012-13]에 대한 사건 심의 결과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판단하고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발의하기로 함.
- ⑨ 사건번호 [2012-14]에 대한 사건 심의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이후로 미루기로 하다. 법률자문은 현 학내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이 상위법(학내 다른 규정 포함)에 위배됨이 없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구해보기로 하다. 법률자문은 교내 연세공익법률지원센터 간사로 계시는 손창완교수에게 구하기로 하다.

10. 폐회 : 오후 6시 15분

붙임. 회의 속기록 1부

결 재	전문연구원	소장	학생복지 처장	교학부총 장
	노주희	나윤경	손봉수	12/20 유강민

의견서

수신: 성평등상담실

참조: 노주희 연구원

발신: 법학전문대학원 손창완 교수

제목: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의 건

위 제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다 음

1. 대상규정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7. 정식 신고, 접수되지 않은 사건일지라도 성평등센터가 제보나 상담 등으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 성폭력대책위원회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고, 위원장은 사건 당사자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해 소급, 확인해 줄 것을 요청, 가해자로 확인된 자를 공식 기록에 남기고, 적법한 징계 내용과 수위를 결정할 것을 발의 <개정 2012.11.13 >

제14조 (신고 등) ① (생략)

②피해자와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상담실에 성폭력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개정 2012.11.13.>

2. 질의 요지

위 규정의 상위법 위반 여부

3. 답변

1)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내용은 성평등센터가 성폭력사건은 인지한 경우 이를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은 학칙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학생 및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칙 및 관련규정에서 성폭력 사건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학교는 이를 근거로 하여 징계결정을 내릴 수 있고,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사건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고없이절차

가 처벌할 수 없으나, 징계 절차는 형사절차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신고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이 법령 또는 학칙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내용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형사절차의 '고발'에 해당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에 관한 '신고'도 고발에 준하여 보면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규정이 법령 또는 학칙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